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의 시설과 설비 이용, 정보 접근 보장에 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